

DMC 금호 리첸시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2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29층 5개동, 총 450세대 중 일반공급 2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세대수

구분		16	59A	59B	74	84	계
분양 세대수		1	12	51	60	142	266
기관추천 배정세대(예비대상자)		-	1(1)	5(5)	6(6)	14(14)	26(26)
기관별 세대수 배정	국가유공자 등	-	1(1)	1(1)	1(1)	4(4)	7(7)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1)	1(1)	1(1)	3(3)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	1(1)	1(1)	3(3)	5(5)
	서울시 장애인	-	-	1(1)	2(2)	3(3)	6(6)
	중소기업근로자	-	-	1(1)	1(1)	3(3)	5(5)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는 예비대상자.

II

공급일정 안내(예정)

구분	일자(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19.11.21(목)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주택전시관 개관	2019.11.22(금)		당사 주택전시관 (아래 약도 참조)
특별공급 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2019.11.26(화) 08:00~17:30	인터넷접수(http://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방문접수	2019.11.26(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9.12.05(목)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ap2you.com)
정당계약	2019.12.16(월)~2019.12.18(수) 10:00~16:00		당사 주택전시관

- ※ 2019.11.21(목) 입주자모집공고를 예상한 분양일정으로 주택전시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인터넷접수와 달리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 시간이 상이(오전 10시~오후 2시)하오니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청약신청자께서는 반드시 주택전시관으로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신청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청약예치 기준금액>_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1.21(예정)]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세대”란

“세대”란 다음 각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1(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2개월)내에 있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 신청, 미 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00% 범위에서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분**(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합니다.)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 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 예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서울시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과밀억제권역으로 기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유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주택전시관,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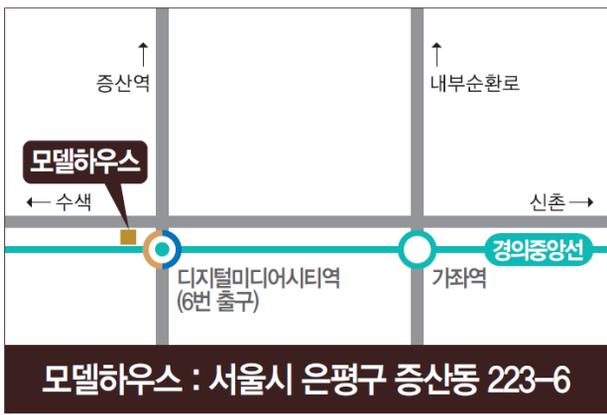


현장위치 및 주택전시관 약도

DMC 금호 리첸시아 현장 위치도



DMC 금호 리첸시아 주택전시관 위치도



- 주택전시관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3-6
DMC 금호 리첸시아 주택전시관
- 대표번호
02-304-0450
- 홈페이지
<http://www.dmckhapt.com/>

※ 첨부자료는 특별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필히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